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

건강관리카드는 무엇인가요?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 이직·퇴직 이후에도 건강관리카드를 통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베릴륨, 석면, 석탄 발전소 작업 등 특정 분진작업, 벤젠, 염화비닐, 크롬산, 카드뮴, 비파괴 검사 업무 등에 일정기간 종사하였거나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고)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건강관리카드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물질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필요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 사진(2.5cmx3cm) 1장
- 카드 발급대상 업무(동법 시행규칙 별표25)에 종사한 사실 및 대상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만 해당)

신청방법



발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건강관리카드 물질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카드 소지자가 발급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첫해 제외)에 지원합니다.
 - ※ 건강관리카드 발급 물질의 공정에 계속 종사하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지원
- 건강진단 시 건강관리카드(모바일 카드 포함)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경우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 ※ 특수건강진단 수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2만원 정액) 별도 지원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문의처

연번	관할지역	문의처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제외 전지역)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2.6711.2832
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51.520.0621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62.949.8756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53.609.0540
5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32.510.0569
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42.620.5636
7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경기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31.296.2823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5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유해물질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벤지딘과 그 염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베릴륨과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 포함)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영이 있는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 포함)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
석면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 이하 다목에서 같음)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 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나목의 업무 종사 개월수)×10 + (다목의 업무 종사 개월수)”가 120을 초과하는 자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
분진작업, 석탄발전소 작업	가.~하. 갱내 또는 옥내에서 하는 분진발생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확인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재처리 등의 과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너목의 업무는 5년 이상) ※ 진폐건강관리수첩 발급자는 제외
염화비닐	가.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의 현탁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
크롬산·중크롬산과 그 염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 포함)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
삼산화비스	삼산화비스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스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
니켈과 그 화합물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
카드뮴과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
벤젠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
제철용 코크스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 (코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6년 이상 종사
비파괴검사(방사선)	비파괴검사(방사선) 업무	1년이상 종사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
1,2-디클로로프로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
1,3-부타디엔	가. 1,3-부타디엔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무 나. 1,3-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
산화에틸렌	가. 산화에틸렌을 생산, 취급, 멸균 또는 소독하는 업무 나. 산화에틸렌 소독기를 수리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